접수번호	이의신청 2017-14	결정일	2018.1.24.
제 목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심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사유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객관적인 장애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6지0926, 2017.1.19. 같은 뜻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결정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신청인에게 있으므로(조심 2017지578, 2017.8.21. 참조)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결정이유	아래 참조		

1. 처분요지

신청인은 2013.5.13. 경상북도 ○○○ ○○○ ○○○ 000번지 외 0필지 토지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 감면 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0,000,000원, 지방교육세 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원, 합계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17.10.10. 부과고지 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신청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4.2. ○○○ ○○○에서 ○○○로 귀농하면서 2013.5.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2014.6.30.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빌려온 포크레인이 뒤집히는 사고를 당하여, 2014.7.2. ○○○○를 수술하게 되었고 그 후 ○○수술과 ○○○ ○○ 수술을 하였으며, 결국은 ○○○으로 쓰러져 지금까지도 약을 먹고 있으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분할납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신청인의 경우 질병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어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의 부지 또는 처분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이 건 이의신청의 쟁점은 신청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취득세의 50%를 경감 받은 후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청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신청인은 2013.4.2. ○○○ ○○○ ○○○ 000, 000동 0000호(○○○, ○○○○○)에서 경상북도 ○○○ ○○○ ○○○ 0000-0, 000동 000호(○○○○)으로 전입하여 이의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주민등록등(초)본 열람내역에 나타난다.

(2) 신청인은 2013.5.13.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 따라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경감 받았음이 취득세 신고서 및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나타난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약 2년 후인 2015.4.6. 이 사건 토지를 신청외 ○○○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토지 소유권 이전 내역>

지 번	면적	취득일	매도(소유권이전)일	비 고
○○○ ○○○ ○○○ 000	0,000㎡	2013.5.13.	2015.4.6.	2017.3.3. 합병되어 ○○○ ○○○ ○○○ 000(0,000㎡)
○○○ ○○○ ○○○ 000-0	0,000㎡	2013.5.13.	2015.4.6.	

(4) 신청인이 제출한 ○○○○○○ ○○○○○○의 진단서에는 2015.5.8. ○○○○○ ○○ 및 ○○○○ ○○ 발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의료재단 ○○○○ ○○○○의 진단서에는 2015.5.4. ○○○○ ○○○ 및 ○○○ ○○○으로 입원하여 2015.5.6. ○○ 수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5) 신청인의 배우자인 신청외 ○○○은 경상북도 ○○○ ○○○ ○○○ 000번지 외 0필지를 2017.3.8.부터 경작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농지원부 조회 시스템에 나타난다.

<농지원부상 임차농지 현황>

임차농지 지번	면 적	지 목	경작개시일
○○○ ○○○ ○○○ 000	000㎡	○○○	2017.3.8.
○○○ ○○○ ○○○ 000-0	000㎡	○○○	2017.3.8.
○○○ ○○○ ○○○ 000-0	000㎡	○○○	2017.3.8.

(6) 처분청은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한 취득세 0,000,000원, 지방교육세 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원, 합계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17.10.10. 부과고지 하였다.

(7)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와 ○○를 심하게 다쳐 3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지금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당초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추징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그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도 경작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소유자의 과실 없이 부득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객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조심 2015지1156, 2015.12.21. 같은 뜻임)인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반면, 신청인이 제시하고 있는 질병 등의 사유만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조심 2016지0926, 2017.1.19. 같은 뜻임) 신청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 매각 후 신청인의 배우자가 다른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비추

어 납세의무에 대한 확인은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아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신청인에게 있고(조심 2017지578, 2017.8.21. 참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도10350 판결 참조)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추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처분청이 분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상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청인에 대해 분할납부를 거부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조심 2016지 0463, 2016.6.22.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론

관련규정과 제반 상황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24.

경 상 북 도 지 사

참고 자료(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13.8.13. 법률 제120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6. ~ 11. (생략)